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0. . . (제 회)	

국립외교원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외교부장관)
제출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립외교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개정된 국립외교원법의 취지에 따라, 국립외교원이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교수요원을 확보하는 한편, 교수요원의 성과관리를 향상시키고 연구능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국립외교원 전임교수요원의 임용 방법 및 절차 등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교수요원의 자격요건 강화(안 제2조제1항)

- 1) 현행 규정은 대학교원의 최소 자격요건을 규정한 고등교육법 및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조교수 4년, 부교수 7년, 교수 10년의 교육·연구 경력 필요)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음.
- 2) 그러나 실제 대학에서는 각 실정에 맞게 이보다 강화된 요건을 요구하는 바, 국립외교원도 우수한 자질을 지닌 교수요원을 확보하기 위해 보다 강화된 기준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3) 다른 국립대학과 유사하게 전임교수요원의 자격요건을 조교수 5년, 부교수 9년, 교수 14년으로 강화함.

나. 교육·연구 경력 산정의 기준 명시(안 제2조제2항)

- 1) 안 제2조제1항에서 교수요원의 자격 등 관련한 준용규정을 삭제함

에 따라, 신설 자격요건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해짐.

- 2) 이에 따라 대학교원과 동일하게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명시함.

다. 국립외교원에 교수 임용 심사위원회를 설치(안 제3조)

- 1) 현행 제도 하에서는 국립외교원 전임교수요원을 일반적인 공무원 채용절차에 따라 채용하고 있어, 국립외교원의 특수성을 고려한 역량 및 전문성을 철저히 검증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음.
- 2) 외교관 양성기관이자 정책연구기관인 국립외교원의 특성에 적합한 인재 채용에 필수적인 전문성 심사를 보다 면밀히 할 필요가 있음.
- 3) 국립외교원에 교수 임용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채용 예정 분야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내·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함.

라. 전임교수요원 신규임용 관련 규정 마련(안 제4조)

- 1) 개정 국립외교원법 제5조제7항은 전임교수요원의 임용 방법 및 임용 절차 등을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 2) 국립외교원의 특수성에 대해 고려하면서도 대학교원에 준하는 임용 절차 및 방법을 도입함으로써, 국립외교원이 필요로 하는 적합하고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함.
- 3) 전임교수요원 신규임용은 공개경쟁채용의 방식으로 하되, 교육공무원임용령상 규정된 대학교원 임용절차에 따라 서류심사, 공개발표

및 면접심사의 순서로 하고, 신규 임용자의 임용 기간은 조교수 4년, 부교수 5년, 교수는 정년까지의 기간으로 하도록 함.

마. 교육공무원법상의 임용 결격사유를 준용(안 제5조)

- 1) 개정 국립외교원법 제5조제7항은 전임교수요원의 신분보장과 관련하여 교육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전임교수요원의 임용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을 따라야 함.
- 2) 법 체계 일치를 위해서는 국립외교원 전임교수요원의 임용과 퇴직에 대해 서로 동일한 결격사유를 적용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 3) 전임교수요원의 임용 결격사유에 대해서도 교육공무원법을 따르도록 명시함.

바. 임용 유예제도 개정(안 제6조)

- 1) 현재 국립외교원 전임교수요원에 적용되는 공무원임용령상의 임용 유예 사유에는 병역복무, 학업계속 등 전임교수요원 채용후보자에 대해서는 적합하지 않은 사유가 포함되어 있으며, 국립외교원의 제한된 교수 인력 등 인력수급 사정상 임용유예 기간은 6개월 이내로 제한할 필요가 있음.
- 2) 병역복무, 학업계속 등 사유는 전임교수요원 임용유예 사유에서 제외하고, 임용유예 기간을 6개월 이내로 설정함.

사. 교수요원의 재임용 절차 도입(안 제7조)

- 1) 안 제4조 및 제8조에 따르면 국립외교원 조교수는 4년, 부교수는 5

년의 근무기간을 정하여 신규 임용하도록 하고, 근무기간이 만료된 자에 대해서는 승진임용 절차를 도입하고 있음.

2) 근무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승진임용이 되지 않은 전임교수요원에 재임용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기존 재직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3) 승진임용이 되지 않은 자에게 재임용 기회를 부여하되, 그 횟수를 2회, 각 1년으로 제한함으로써 전임교수요원이 연구 및 강의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할 동기를 제공함.

아. 교수요원의 승진임용 절차 도입(안 제8조)

1) 개정 국립외교원법 제5조제7항에 따라 동 시행령에 국립외교원 전임교수요원의 임용 방법 및 절차를 마련함에 있어, 전문성 검증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학교원에 준하는 방식을 도입하고자 하는 바, 일반 국립대학에서 운용 중인 승진임용절차 역시 도입할 필요가 있음.

2) 연구·교육 능력이 우수한 전임교수요원에게 승진 기회를 제공하여 원내 활동 참여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경쟁력 강화 의지를 제고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립외교원의 역량 강화를 모색하고자 함.

3) 국립외교원장은 조교수로 4년, 부교수로 5년 이상 근무한 자 중 일정 연구실적 요건을 충족한 자를 대상으로 승진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외교부장관에게 승진임용을 제청할 수 있도록 함.

자. 교수요원의 업무성과 평가를 시행령으로 상향입법(안 제9조)

1) 현재 국립외교원 전임교수요원의 업무성과 평가는 외교부 예규에서 규정하고 있음.

2) 교수요원의 업무평가는 안 제7조 및 제8조에 신설된 재임용 및 승진임용 심사의 기초가 되고 있는 바, 재임용·승진임용과의 연동을 위해 시행령에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

3) 전임교수요원의 업무평가는 강의 및 연구실적 평가 성적과 근무평정 성적을 종합하여 실시하며, 근무평정은 12월 말 기준으로 국립외교원장, 연구소장, 기획부장, 교수부장이 각각 연 1회 평가하도록 하는 외교부 예규상의 업무성과 평가 규정을 시행령에 포함함.

차. 국립외교원에 교수징계위원회를 설치(안 제10조)

1) 개정 국립외교원법 제5조제7항은 전임교수요원의 징계 및 소청과 관련하여 교육공무원법 및 교원지위향상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교수요원의 징계사건을 심의하기 위한 징계위원회가 필요함.

2) 그러나 현재 외교부 소속 외무공무원 징계위원회는 외무공무원법상 외무공무원만을 그 대상으로 하므로 전임교수요원의 징계를 관할하는 징계위원회가 부재한 상황임.

3) 전임교수요원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립외교원에 위원장(연구소장)과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교수징계위원회를 두고, 위원의 구성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기관 의견조치 실시 예정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대통령령 제 호

국립외교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립외교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전단 중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을 “직급별로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있다”를 “있으며, 박사학위 취득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교육·연구 경력에 2년을 더하여 산정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교수 :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교육·연구 경력이 14년 이상인 사람
 2. 부교수 :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교육·연구 경력이 9년 이상인 사람
 3. 조교수 :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교육·연구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② 교육·연구 경력의 산정에 관하여서는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부터 제7조까지를 각각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로 하고, 제3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임용 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전임교수요원의 신규임용, 재임용 및 승진임용 시 대상자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국립외교원에 다음 각 호의 심사위원회를 둔다.

1. 교수 신규임용 심사위원회

2. 교수 재임용 심사위원회

3. 교수 승진임용 심사위원회

② 제1항의 심사위원회는 외교안보연구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외교부장관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총 11인 이내의 심사위원회 중 1/3이상 위원은 외부위원으로 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소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자를 출석시키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 각 호 심사위원회 위원의 구성, 외부위원의 자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전임교수요원의 신규임용) ① 전임교수요원(경력교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영에서 같다)의 신규임용은 공개경쟁채용의 방식으로 한다.

② 원장은 임용예정 직급·직위, 응시자격, 선발 예정 인원 등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일간신문, 방송 또는 인터넷,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전임교수요원 신규임용 후보자에 대한 심사는 서류심사(자격요건심사, 기초 및 전공 심사, 연구업적 심사), 공개발표 및 면접심사의 순

서로 한다.

④ 신규임용자의 직급별 임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수 : 정년까지의 기간

2. 부교수 : 5년

3. 조교수 : 4년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전임교수요원 신규임용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채용의 절차 및 방법 등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결격사유)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결격사유)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신규임용 후보자로 선정할 수 없다.

제6조(임용유예) ① 외교부장관은 임용대상자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그 임용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임용 유예기간 내 임용절차를 마치지 아니한 자는 임용 결정을 취소한다.

1. 임신하거나 출산한 경우

2. 3개월 이상 장기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임용의 유예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임용의 유예를 원하는 사람은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하는 유예기간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제7조(재임용) ① 원장은 전임교수요원(부교수 및 조교수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제4조제4항의 직급별 임용기간이 종료되는 자

를 대상으로 제3조에 따른 재임용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재임용 여부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청하여야 한다.

② 전임교수요원의 재임용 기간은 1년, 2회로 하며, 해당 기간을 경과하여 임용할 수 없다.

③ 원장은 전임교수요원에게 제4조제4항에 따른 직급별 임용기간이 종료되기 6개월 전까지 재임용 심사 대상임을 통지하여야 하며, 심사 대상 통지 시에는 심사기준, 심사일정, 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통지를 받은 전임교수요원은 임용기간 종료 3개월 전까지 재임용 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기한 내에 별도로 재임용 신청의 의사를 문서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재임용 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⑤ 전임교수요원을 재임용할 때에는 근무기간 동안의 연구실적, 업무성과를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전임교수요원이 제3조에 따른 재임용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⑥ 재임용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가 그 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원장에게 서면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전임교수요원 재임용에 필요한 절차, 방법 및 구체적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제8조(승진임용) ① 원장은 전임교수요원(부교수 및 조교수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해당 계급 재직기간, 연구실적 등 요건을 충족한 자를 대상으로 제3조에 따른 승진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외교부장관에게 승진임용을 제청할 수 있다.

② 전임교수요원이 승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직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1. 조교수 : 4년

2. 부교수 : 5년

③ 전임교수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 될 수 없다.

1.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 중에 있는 경우

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소극행정, 음주운전(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더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가. 정직: 18개월

나. 감봉: 12개월

다. 견책: 6개월

④ 제2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 기간, 징계처분 기간 및 제3항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대

학에서 전임교원으로서 근무한 기간은 제1항의 최소근무연수 산정에 100% 포함하고, 최대 2년까지만 인정하되, 해임, 파면 또는 직권면직된 경우에는 해당 대학에서의 근무기간은 제2항의 기간 산정에서 제외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전임교수요원 승진에 필요한 요건, 절차, 방법 및 구체적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제9조(업무성과 평가) ① 전임교수요원의 업무평가는 강의 및 연구실적 평가성적과 근무평정성적을 종합하여 실시한다. 기타 세부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② 근무평정은 12월 말 기준으로 원장, 연구소장, 기획부장, 교수부장이 각각 연 1회 평가를 진행한다.

③ 업무평가 결과는 전임교수요원의 승진, 재임용, 연구조성비 지급 등 기타 인사행정관리에 반영한다.

제10조(교수요원의 징계) ① 전임교수요원의 징계 사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립외교원에 교수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원장은 전임교수요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수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교수징계위원회는 연구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과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④ 교수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부 소속 직원으

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감정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⑤ 교수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의결을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서의 정본을 첨부해 외교부장관과 원장에게 각각 통보해야 한다.

⑥ 외교부장관은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등 처분을 해야 한다.

⑦ 원장은 교수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가법다고 인정할 경우 교수징계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교수요원의 자격 등) ① 「국립외교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국립외교원에 두는 전임교수요원(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임명되는 경력교수는 제외하며, 이하 전임교수요원이라 한다)은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국립외교원장의 제청으로 외교부장관이 임명한다. 이 경우 교육·연구 경력은 실무경력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2조(교수요원의 자격 등) ① ----- ----- ----- ----- ----- ----- 직급 별로 각 호의 ----- ----- ----- ----- ----- ----- 있으며, 박사학위 취득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교 육·연구 경력에 2년을 더하여 산정한다. 1. 교수 :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교육·연구 경력이 14년 이상 인 사람 2. 부교수 : 담당할 분야와 관련 된 교육·연구 경력이 9년 이 상인 사람 3. 조교수 : 담당할 분야와 관련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②·③ (생략)

<신 설>

된 교육·연구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② 교육·연구 경력의 산정에 관하여서는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③·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제3조(임용 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전임교수요원의 신규임용, 재임용 및 승진임용 시 대상자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국립외교원에 다음 각 호의 심사위원회를 둔다.

1. 교수 신규임용 심사위원회
2. 교수 재임용 심사위원회
3. 교수 승진임용 심사위원회

② 제1항의 심사위원회는 외교안보연구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외교부장관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총 11인 이내의 심사위원회 중 1/3 이상 위원은 외부위원으로 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신 설>

이 소집하고, 소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자를 출석시키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 각 호 심사위원회 위원의 구성, 외부위원의 자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전임교수요원의 신규임용)

① 전임교수요원(경력교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영에서 같다)의 신규임용은 공개경쟁채용의 방식으로 한다.

② 원장은 임용예정 직급·직위, 응시자격, 선발 예정 인원 등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일간신문, 방송 또는 인터넷,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전임교수요원 신규임용 후보자에 대한 심사는 서류심사(자격요건 심사, 기초 및 전공 심사, 연구업적 심사), 공개발표

<신 설>

<신 설>

및 면접심사의 순서로 한다.

④ 신규임용자의 직급별 임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수 : 정년까지의 기간
2. 부교수 : 5년
3. 조교수 : 4년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전임교수요원 신규임용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채용의 절차 및 방법 등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결격사유)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결격사유)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신규임용 후보자로 선정할 수 없다.

제6조(임용유예) ① 외교부장관은 임용대상자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그 임용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임용 유예기간 내 임용절차를 마치지 아니한 자는 임용 결정을 취소한다.

1. 임신하거나 출산한 경우
2. 3개월 이상 장기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임용의 유예가 부득

<신 설>

이하라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임용의 유예를
원하는 사람은 해당 사유를 증
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하
는 유예기간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제7조(재임용) ① 원장은 전임교
수요원(부교수 및 조교수에 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제4조제4항의 직급별 임용기간
이 종료되는 자를 대상으로 제3
조에 따른 재임용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재임용 여부
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청하여야
한다.

② 전임교수요원의 재임용 기간
은 1년, 2회로 하며, 해당 기간
을 경과하여 임용할 수 없다.

③ 원장은 전임교수요원에게 제
4조제4항에 따른 직급별 임용기
간이 종료되기 6개월 전까지 재
임용 심사 대상임을 통지하여야
하며, 심사대상 통지 시에는 심
사기준, 심사일정, 절차 등을 안

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통지를 받은 전임교
수요원은 임용기간 종료 3개월
전까지 재임용 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기한 내에 별도로
재임용 신청의 의사를 문서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재임용 심
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⑤ 전임교수요원을 재임용할 때
에는 근무기간 동안의 연구실
적, 업무성과를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전임교수요
원이 제3조에 따른 재임용심사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⑥ 재임용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가 그 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
의가 있을 경우 통보 받은 날부
터 10일 이내에 원장에게 서면
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전임교
수요원 재임용에 필요한 절차,
방법 및 구체적 사항은 외교부
장관이 정한다.

<신 설>

제8조(승진임용) ① 원장은 전임 교수요원(부교수 및 조교수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해당 계급 재직기간, 연구실적 등 요건을 충족한 자를 대상으로 제3조에 따른 승진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외교부장관에게 승진임용을 제청할 수 있다.

② 전임교수요원이 승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직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1. 조교수 : 4년
2. 부교수 : 5년

③ 전임교수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 될 수 없다.

1.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 중에 있는 경우
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소극

행정, 음주운전(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더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가. 정직: 18개월

나. 감봉: 12개월

다. 견책: 6개월

④ 제2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 기간, 징계처분 기간 및 제3항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대학에서 전임교원으로서 근무한 기간은 제1항의 최소근무연수 산정에 100% 포함하고, 최대 2년까지만 인정하되, 해임, 파면 또는 직권면직된 경우에는 해당 대학에서의 근무기간은 제2항의 기간 산정에서 제외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전임교수요원 승진에 필요한 요건, 절차, 방법 및 구체적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제9조(업무성과 평가) ① 전임교

<신 설>

<신 설>

수요원의 업무평가는 강의 및 연구실적평가성과 근무평정 성적을 종합하여 실시한다. 기타 세부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② 근무평정은 12월 말 기준으로 원장, 연구소장, 기획부장, 교수부장이 각각 연 1회 평가를 진행한다.

③ 업무평가 결과는 전임교수요원의 승진, 재임용, 연구조성비 지급 등 기타 인사행정관리에 반영한다.

제10조(교수요원의 징계) ① 전임 교수요원의 징계 사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립외교원에 교수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원장은 전임교수요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수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교수징계위원회는 연구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과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 ~ 제7조 (생략)

④ 교수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부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검정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⑤ 교수징계위원회는 징계등의 결을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서의 정본을 첨부해 외교부장관과 원장에게 각각 통보해야 한다.

⑥ 외교부장관은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등 처분을 해야 한다.

⑦ 원장은 교수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가법다고 인정할 경우 교수징계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 ~ 제15조 (현행 제3조부터 제7조까지와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외교부 기획협력과	
연 락 처	(02) 3497 - 7788